

전과에 관한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시기 및 횟수) ①2년제 학생의 경우 1학년 2학기에, 3년제 학생의 경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가능하다

②전과는 본인의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한다.

제 3 조(허용범위) ①모집단위 정원의 10% 이내로 허용한다.

②2년제는 2년제와 3년제 학과로, 3년제는 3년제 학과로만 허용한다.

③산업체취탁학과는 산업체취탁학과로만 허용한다.

제 4 조(신청) ①전과신청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각 학과는 전과희망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.

③교무처에서는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최종 선발한다.

제 5 조(심사 및 허가) ①전과희망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며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재학기간 중 성적
2. 전입학과 교수 면접
3. 기타

②전과의 허가는 해당 학기 개시 1주일 이전에 확정하여 통보한다.

제 6 조(학점인정)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7 조(전과제한) ①전공심화과정 및 계약학과는 전과를 불허한다.

②유아교육과, 치위생과로의 전입은 불허한다.

③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.

제7 조의 2(폐과로 인한 전과)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시의 전과는 예외로 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(2016.08.01 제정)

제 8 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)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